

구분	변경전	변경후	비고
내용	<p>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</p> <p>가. 본인 열람 및 정정청구권 (생략)</p> <p>나.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(생략)</p> <p>다.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</p>	<p>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기간</p> <p>· (금융)거래 종료일* 로부터 5년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(금융)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</p> <p>·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됩니다.</p> <p>·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 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.</p> <p>* (금융)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(여수신, 내·외국환 및 제3자 담보제공 등) 및 서비스(대여금고, 보호예수, 외국환거래지정,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)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</p> <p>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</p> <p>가. 본인 열람 및 정정청구권 (생략)</p> <p>나.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(생략)</p> <p>다.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</p>	<p>항목 신설 (은행연합회 개정 개인정보보호준칙 중 파기가이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반영)</p>

	<p>(생략) 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(생략)</p> <p>라. 연락중지 청구권 ·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마.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 ·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,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의 삭제를 당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법률상 의무이행 등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바. 개인신용정보 삭제제외 요청 ·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/p>	<p>항목추가 (은행연합회 개정 개인정보보호 준칙 추가 반영)</p> <p>항목추가 (은행연합회 개정 개인정보보호 준칙 추가 반영)</p> <p>항목추가 (은행연합회 개정 개인정보보호 준칙 추가 반영)</p>
--	--	---	--